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단50249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55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단502497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전우석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81,9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의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리스(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9. 해외 수출업자(물품공급자)와 100톤 리베르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운송인은 그 무렵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6. 피고와 리스이용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27. 피고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크레인 매매대금을 C은행에 결제한 다음 C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해 주었다.

라. 이 사건 크레인 중 중물 부분은 2011. 7. 14.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 중 주물 부분은 2011. 7. 26.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2011. 7. 19.에 이 사건 크레인 중 중물 부분에 관한 수입신고서를, 2011. 7. 29. 이 사건 크레인 중 주물 부분에 관한 수입신고서를 각 발급받아 수입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수입절차를 마친 이 사건 크레인을 리스이용자 D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크레인 수입에 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관세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관세부과처분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크레인 대금을 결제한 다음 C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1. 5. 26.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이다. 그런데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로 관세부과처분을 받고, 관세로 103,081,94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03,081,9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